

KERI Insight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임동원

한국경제인협회 책임연구위원
(dwlim@fki.or.kr)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dongahm@hanmail.net)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생이 심화되고 있고,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원인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압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높은 주택가격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 방위적으로 대책을 추진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혼인과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요 외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며, 오히려 비혼에 비해 혼인 부부가 불리한 혼인 페널티 현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 방안, 즉 혼인 페널티의 제거 및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

혼인 페널티를 제거하기 위해 부동산세금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현행 혼인 후 5년 이내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예외조항과는 별도로 남녀 모두 49세 이하자로서 혼인하는 부

부에게는 5년 제한없이 결혼기간 동안 부부 각각 1세대 1주택자 조항을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혼인 가구가 단독 가구의 요건보다 최소한 2배는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혼인 장려를 위해 배우자간 재산 무상이전은 동일 세대(世代)간 이전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및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미국 및 영국과 같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할 필요가 있으며, 혼인비용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을 위해 소득세 자녀수 N 분N승제를 도입하되,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희망하는 세대에게만 적용하고 고소득자 혜택 제한을 위해 세액감면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녀세액공제액 및 자녀장려금의 대폭 인상과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의 여성활약추진제, 육아서포트 기업 도입에 따른 법인세 공제혜택을 검토해야 한다.

I. 서론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생이 심화되고 있고, 합계출산율 역시 가장 낮은 수준임

- 합계출산율: (1970) 4.53명, (1983) 2.06명[인구 대체 이하], (2002) 1.18명[초저출생 1.3 이하], (2018) 0.98명[극초저출생], (2023) 0.72명

- 출생아 수(만명): (1970) 100.7, (2002) 49.7, (2017) 35.8, (2020) 27.2, (2023) 23.0

□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원인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¹⁾

- 비정규직이 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이 과거보다 심화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자녀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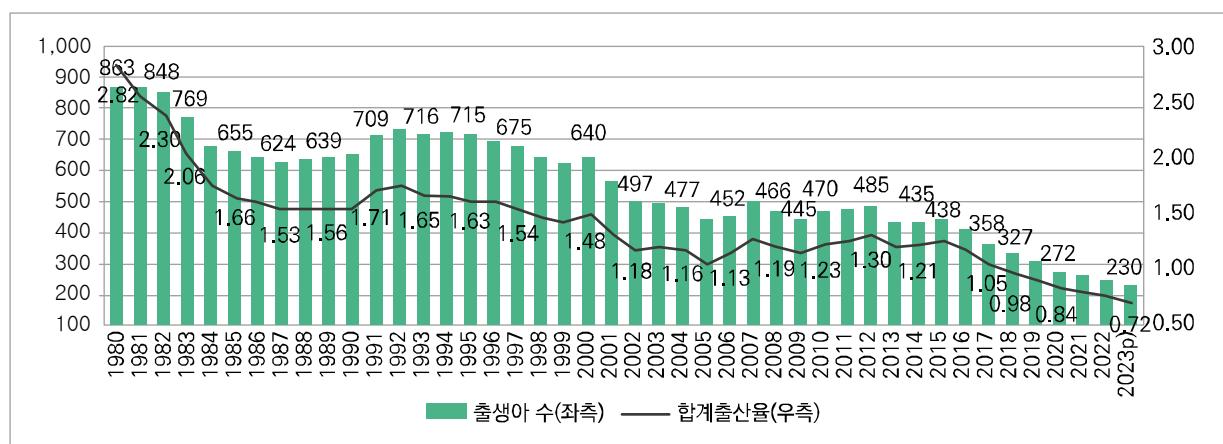
○ 고용불안의 경우 고용안정성에 따라 결혼의향이 크게 차이남(취업을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인 경우 결혼의향이 낮음. 공공기관 근무자·공무원은 결혼의향이 높음)

- 주거불안의 영향력은, 주택마련비용에 대한 정보를 접한 그룹의 결혼의향이나 희망자녀수가 낮게 나오며, 주택가격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점 등에서 확인됨

- 양육 불안(양육환경, 양육비용)을 보면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고, 자녀에 대한 지원 의무감이 강한 청년일수록 결혼의향과 희망자녀수가 낮게 나타남

○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경쟁압력’을 낮추고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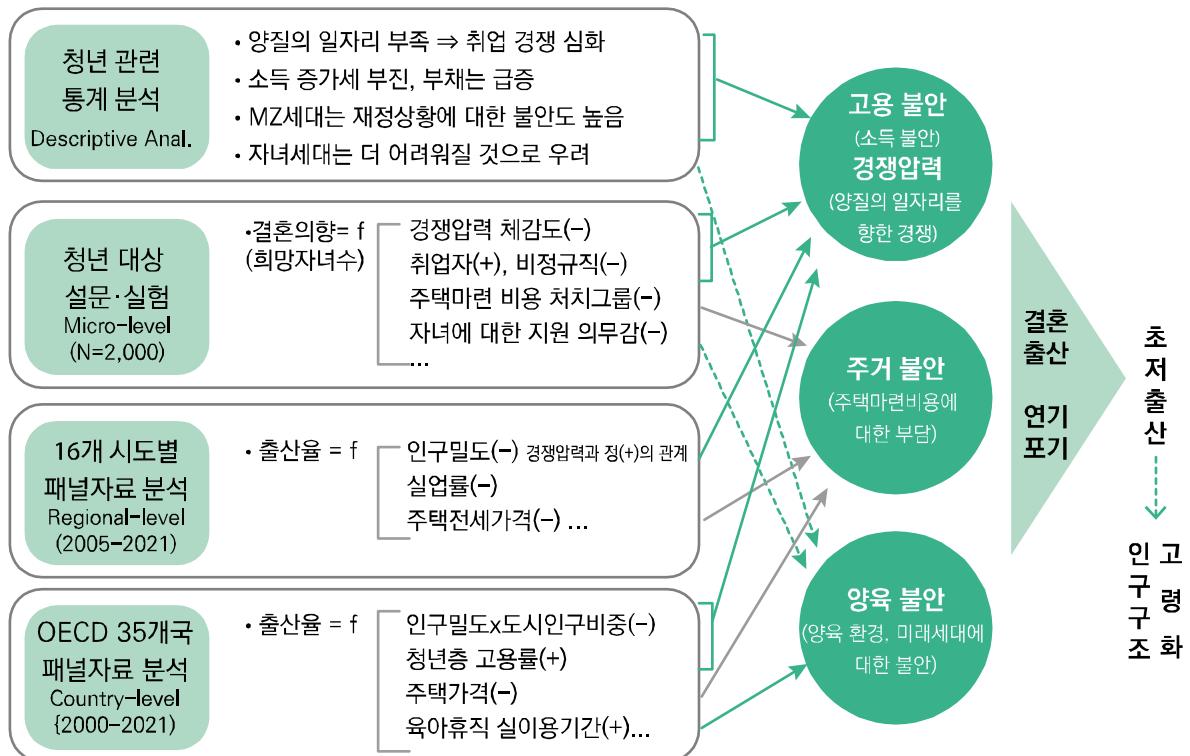
〈그림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데이터 재구성(이강호, 저출생의 가속화와 미래대응전략, 2024.6.27. p.3)

1) 황인도 외,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한국은행, 2023.11.

〈그림 2〉 청년들은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불안으로 연애, 결혼, 출산포기



자료: 황인도외(2023.11.),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조태형, 인구·기후위기와 한국경제, 2024.7.16. p.20)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 25~49세 남녀 2천명에 대해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²⁾,
 - 미혼남녀 중 결혼의향이 없는 경우는 22.8%이며,
 - 결혼기피 주된 사유로 남성은 결혼식 비용·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여성은 결혼에 따른 역할 부담을 꼽았음

- 응답자 대부분은 주거·일자리 등의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함
- 여러 조건 중, 남성은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는지가, 여성은 결혼 후에도 일에 열중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 2024.5.2.

〈표 1〉 조건이 더해졌을 때 결혼의향 추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률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성별×연령					
				만25~29세		만30~39세		만40~49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주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면	67.6	78.8	54.7	78.7	60.6	84.1	61.4	73.6	41.9
만족할만한 일자리를 갖고 있다면	75.8	85.3	64.9	86.4	67.9	86.5	69.1	82.8	57.6
결혼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65.0	75.5	53.0	79.9	58.3	77.3	58.1	68.7	42.5
결혼 후 결혼 전보다 제도적 혜택이 많다면	70.0	79.8	58.8	82.6	62.6	83.5	60.9	73.0	52.9
결혼 후에도 일에 열중할 수 있다면	76.5	80.3	72.2	82.4	79.4	82.8	75.9	75.4	61.0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 2024.5.2., p.3

□ '경쟁압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높은 주택가격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 단기적으로는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 방위적으로 대책을 추진함이 필요함

□ 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결혼 의향에 있어 경제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므로

- 세제를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으로 만들어 결혼 하여 아이를 가지는 것이 비혼으로 있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도록 조세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를 알아보고, 주요 외국의 저출생 대응 세제를 살펴본 후,

-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는 것이 비혼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II. 우리나라의 혼인·출산·양육 관련 세제

1. 혼인 관련 세제

1) 소득세

□ 과세단위: 개인단위

- 현행 소득세제는 혼인을 하더라도 소득세 과세 단위는 개인단위로 유지되며, 혼인에 따른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음
- 소득세의 과세단위(tax unit)는 소득을 계산하는 인적 단위를 말함
 - 이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득을 얻는 개인단위로 할 것인지 또는 소득을 소비하는 소비단위로 할 것인지의 문제임. 소비단위주의는 소비단위의 크기에 따라 부부단위주의와 가족단위주의로 구분되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비단위로 합산할 소득을 구성원의 수로 분할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분할주의와 합산비분할주의로 구분됨
 - 소득세는 소득이 커지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³⁾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단위를 개인단위로 할 것인지 또는 소비단위로 할 것인지는 소득세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납세자의 입장에서 소비단위주의 중 합산비분할주의는 누진율을 강화시키므로 개인단위주의보다 불리하나, 합산분할주의는 누진율을 완화시키므로 개인단위주의보다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함⁴⁾
- 과거에는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자산 소득에 한하여 부부단위합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2002년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부부합산주의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자산소득이 있는 혼인한 부부를 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차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

족생활의 유지 보장)에 위반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완전한 개인단위주의’로 전환했음⁵⁾

- 당시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부부단위로 과세했고, 헌법재판소는 “혼인한 부부에게 더 높은 조세를 부과하여 혼인한 부부를 독신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다”며 위헌 판결했음
- 이처럼 소득의 합산은 혼인한 부부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안길 수 있고, 부부단위로 과세할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혼인 전보다 세부담을 크게 하기 때문임
- 현재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계산에 있어 혼인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음

□ 혼인 폐널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현행 소득세는 혼인한 부부가 혼인 전보다 오히려 불리한 조항이 있는데, 이를 “혼인 폐널티”라고 함
 - 소득세법상 혼인 폐널티의 중요한 사례는 근로장려금 등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기준 문제임
- 현재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와 극빈층을 위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어 차상위계층은 기존 사회복지가 취약한 실정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8년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시행함. 이 제도는 기존의 재정지출정책과 조세지원정책을 결합한 형태로서 미국의 EITC 모형을 토대로 한 것임⁶⁾

3) 현행 소득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소득세 실제 세율은 6.6%~49.5%가 됨

4) 이중교·이동식,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한국세법학회, 2017.9. p.13

5) 임동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22.3.28. p.8

-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CTC: Children Tax Credit)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 함. 그 취지는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데 있음⁶⁾

○ 근로장려금의 대상자

ⓐ 소득요건

- 연간 가구원의 총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홀별이 32백만원, 맞별이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결혼하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혼인 폐널티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맞별이 가구의 경우 2배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함

ⓑ 재산요건

-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혼인한 가구가 불리함

○ 자녀장려금의 대상자

ⓐ 소득요건

-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7천만원 미만으로서,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요건 22백만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혼인 폐널티 문제는 없음

ⓑ 재산요건

-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혼인한 가구가 불리함

□ 혼인에 대한 세제혜택: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3년 말 「소득세법」을 개정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원 한도)를 신설하였으며,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함

-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출산증여재산공제)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됨. 단,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임

□ 한편, 2008. 12. 26. 소득세법 개정 전에는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100만원을 소득공제하였음

- 그러나 2008. 12. 26.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에 맞추어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별공제항목을 간소화하면서 혼인소득공제를 폐지하였음

- 그 후 2016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다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선의 일환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별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혼인세액공제를 포함하였으나,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하여 논의하기로 하면서 혼인세액공제의 도입이 유보됨⁸⁾

2.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부동산세금은 취득·보유·양도의 각 단계에 대응하여, [취득] 취득세·[보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양도] 양도소득세가 있음

- 현행 세법에서는 주택의 각 단계마다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음

6)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2, 상경사, 2024.3.1. p.606.

7)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2, 상경사, 2024.3.1. p.610.

8) 이중교·이동식,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한국세법학회, 2017.9. p15.

〈표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제상 혜택

구분	내용
취득세	1세대 1주택자의 세율(1~3%)이 2주택 이상자(1~12%)의 세율보다 낮음
재산세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간별 세율을 0.05%p 인하(2021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이 아닌 12억원을 적용하고,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보유기간 2년, 취득 당시 조정지역은 거주 2년, 12억원 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표 3〉 1세대 1주택 적용 시 혼인 주택에 대한 취급

구분	내용
취득세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 시,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수는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취득세율 적용(2023.3.14. 시행)
재산세	혼인 전 소유주택으로 5년 미경과 시 1세대 1주택자로 봄: 혼인 전부터 각각 1개 주택 소유하고 혼인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종합부동산세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혼인한 자별로 1세대로 보아 주택수 계산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되는 주택은 비과세

- 그러나 1세대 1주택 적용 시 취득세를 제외하는, 혼인 시 미혼자보다 불리
- 취득세는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 시,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수는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취득세율 적용토록 하고 있어 혼인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으나,
-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는 혼인 후 5년 이내에 한쪽 배우자의 주택을 팔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혼인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3. 상속세·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

고, 재산 소유자의 생전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함

-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10~50%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세율임

-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금액 2억원과 아래 표에 기술된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65세이상 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를 포함하는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이 5억원 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고, 5억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적용받음

- 배우자상속공제는 별도로 계산하며, 민법상 법정 지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소 5억 원, 30억원 한도)을 공제함

〈표 4〉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표 5〉 상속세 인적공제제도

구분	공제금액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65세 이상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1천만원 ×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지분 내 실제 상속받은 금액 [단, 최소 5억원, 30억원 한도]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

- 현행 배우자상속공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음

- ①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생존배우자의 재산상속은 결혼 후 증가한 유산의 잠재적 지분의 분할로서, 생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불합리함⁹⁾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대부분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어느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이나, 법실질적 논리로 보면 생존배우자의 기여와 희생으로 취득한 재산이 단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부부공동 생활의 기초를 구성하는 부부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상속과 이혼은 혼인의 해소사유에 해당하나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제도를 이용하여 재산의 명의를 갖지 못하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는데 반해, 상속은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아 과세상 형평에 어긋남
 - 그러므로 배우자간 상속은 이혼의 경우 부부공동 재산의 실질적 분할로 보아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논리와 같이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하든 과세상 차별을 두면 안되고, 생존배우자의 물적생활기초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완전면세 즉,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과 영국의 경우와 같이 1세대(世代) 1회 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을 면제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 ② 현행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지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30억원 한도)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배우자의 사망으로 1주택에서 함께 살다가 남은 배우자가 법정지분을 한도로 30억원을 상속공제 받는 규정으로 인해 상속세 때문에 현재 살던 주택에서 나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 및 2자녀로서 국민평형 아파트 1채가 전 재산인 경우를 가정하면,
 - 2024년 9월 현재 서울의 국민평형 아파트(전용 84㎡ 기준)의 평균 매매가는 9억원(도봉구)~31억원(강남구)으로 나타남.¹⁰⁾ 상속 아파트 가격을 중간값 부근인 21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배우자(아내)의 법정지분은 $1.5/(1.5+1+1)=1.5/3.5=0.42$ 이며, 법정상속액은 9억원이 되며, 일괄공제액 5억원과 합하여 14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음. 이에 따라 과세표준은 21억원-14억원=7억원이 되므로, 7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9,000만원+(7억원-5억원)×30%=150,000,000원이 되며, 배우자는 이 상속세를 자신의 저축재산에서 내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살던 아파트를 팔고 상속세를 낸 후 더 작은 아파트로 옮겨야 함. '법정상속분' 이내라는 불합리한 상속세 규정 때문에 상속재산이 30억원 한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던 국민평형 아파트에서 쫓겨나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9) 김두복·서희열,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과세체계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5권 제2호, 2018.6., p.75

10) 서울신문, 26억 vs 4억...서울 아파트값 '초양극화', 2024.9.30. 참고

- 법정상속분 한도의 배우자상속공제 조건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배우자공제액이 줄어들어 상속세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출산장려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음
 - 상속재산 30억원, 생존 배우자 및 무자녀·1자녀·2자녀·3자녀인 경우의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무자녀인 경우 상속세 0원, 1자녀인 경우 상속세 1.5억원, 2자녀인 경우 상속세 3.2억원, 3자녀인 경우 상속세 4.4억원이 되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속세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 증여재산공제란 수증자를 기준으로 다음 <표 7>의 각각의 구분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원임
- 즉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합산기간)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예를 들어 10년 이내 할아버지로부터 3천만원, 아버지로부터 2천만원, 어머니로부터 2천만원 합계 7천만원의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직계존속의 한도액 5천만원만 공제받고 그 초과분인 2천만원은 공제받지 못함

○ 상속은 사망시 재산의 무상이전이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므로, 상속 및 증여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므로 과세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함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지분 이내에서 30억원 한도로 되어 있고,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6억원으로 되어 있어 서로 상이한 문제점이 있음
- 위 배우자상속공제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배우자 간 증여도 이를 잠재적 고유지분의 청산 등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을 지우지 않아야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비과세와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어 위장 이혼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탈법을 방지하고,¹¹⁾ 혼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표 6> 자녀수에 따른 상속세 계산 사례

(단위: 억원)

구분	무자녀	1자녀	2자녀	3자녀
상속재산(A)	30	30	30	30
일괄공제액(B)	-	5	5	5
배우자공제(C)	법정 지분	1	1.5/2.5	1.5/3.5
	상속공제액	30×1=30	30×(1.5/2.5)=18	30×(1.5/3.5)=13
과세표준(A-B-C)	30-30=0	30-5-18=7	30-5-13=12	30-5-10=15
상속세액	0	0.9+(7-5)×30%=1.5	2.4+(12-10)×40%=3.2	2.4+(15-10)×40%=4.4

<표 7> 증여재산공제액

구 분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11) 김두복·서희열,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과세체계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5권 제2호, 2018.6., p.75

2.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

□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세제지원으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기본공제, 자녀 세액공제, 자녀 교육·의료비 및 보험료 세액공제, 자녀 장려금 등을 적용

- ① 비과세: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월 20만원 이하),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② 기본공제: 기본공제 중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하는데, 해당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 ③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

- ④ 교육비·의료비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거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함
 -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며, 직계비속의 경우 한도액이 영유아~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으로 정해져 있음
 -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종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함
- ⑤ 자녀장려세제: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함
 - 홀별이의 경우 2,100만원 미만, 맞벌이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당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 ⑥ 부가가치세 면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산후조리원 이용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표 8〉 저출산 관련 세제지원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혼인 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	현재는 없음: 과거(2004년~2008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혼인시 10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하였으나, 현재 미시행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원 · 혼인공제: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 출산공제: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통합공제한도(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출산 및 양육 관련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출산 및 자녀(6세 이하) 보육수당(한도 월 20만원), 육아휴직·육아근로시간단축·출산휴가 관련 고용보험 급여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자녀 기본공제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20세 이하)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1인당 공제금액이 1995년 100만원으로 인상 및 2009년 현행 150만원으로 상향
	자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로서,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세액공제 -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대상자녀 연령은 2014년 도입시행 당시 20세 이하였으나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제도의 연령상향에 연동되어 조정
	자녀 교육·의료비 및 보험료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공제 대상 자녀(연령·소득 무관)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의 최대 15%-20%, 난임치료비의 최대 30%,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 납입금의 12% 등 세액공제 - 자녀 1인당 교육비 공제한도는 고등학생 이하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 자녀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7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장애자녀 의료비(한도 없음)에 대해 최대 15% 세액공제 및 미숙아·선천성아이상아 의료비(한도 없음)에 대해 최대 20% 세액공제, 난임 시술·의약품 비용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 - 자녀(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및 20세 이하)가 피보험자인 일반보장성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한도 100만원)
경력 단절·육아 휴직자 지원	자녀 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 연 7,000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제외)
	출산·양육 관련 소비세 면제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산후조리원 이용비(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다자녀가정 구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경력 단절·육아 휴직자 지원	경력단절자 지원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중소·중견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경우 관련 인건비의 15%(중견기업), 30%(중소기업)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2년간 공제
	육아휴직 복직자 지원	육아휴직 후 복직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관련 인건비의 15%(중견기업), 30%(중소기업)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년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육아휴직 복직자의 자녀 1인당 한 차례 적용, 해당기업 근로자수 감소 경우 미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대응 전략, 2023.11. pp.108~109 수정

〈표 9〉 현행 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의 자녀 연령별 제도적용 여부

구 분	임신	출산·양육					
		~ 6세	7세	8세 ~	~ 17세	~ 20세	~ 대학생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자녀 기본공제		○	○	○	○	○	
자녀 세액공제 ¹⁾				○	○	○	
의료비 세액공제	○	○	○	○	○	○	○
교육비 세액공제		○	○	○	○	○	○
보험료 세액공제		○	○	○	○	○	
자녀장려금		○	○	○	○		

주: 1) 7세까지 아동수당 지급(「아동수당법」제4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대응 전략, 2023.11. p.109

□ 현행 자녀 관련 세제지원 제도에서는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의 경우 만 6세까지, 자녀 기본공제는 만 20세까지, 자녀 세액공제는 8세에서 20세

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학생 자녀까지, 보험료 세액공제는 만 20세까지,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만 17세까지 지원되고 있음

〈참고〉 2024.7.25. 발표 「2024년 세법개정안」

□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에서 발표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 2024.1.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024년~20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4.7.3.)에서 발표

-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총급여액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

현 행	개 정 안
<p>□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납입한도 연 30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p>□ 적용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p>□ (좌 등)</p>
<p>□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대상) 무주택 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비과세한도) 50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p>□ 적용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p>□ (좌 등)</p>

〈적용시기〉 (소득공제) 20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0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에서 발표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적용시기〉

 -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민생토론회(2024.3.5.)에서 발표

-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기업의 비용 인정)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2회 이내)한 경우(2024년은 2021.1.1. 이후 출생 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에서 발표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 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 공제금액(첫째 / 둘째 / 셋째, 만원): (현행) 15 / 20 / 30 → (개정안) 25 / 30 / 40

〈적용시기〉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2024.4.4.)에서 발표

-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연 4,400만원*으로 확대

*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 배

〈적용시기〉 20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기준금액 미만 지급)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단독가구	2,200만원
출벌이가구	3,200만원	출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III. 주요 외국의 저출산 대응 세제

1. 프랑스

-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88명에서 2010년 2.02명까지 회복되었다가 2021년 1.79명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임
 - 프랑스 총인구는 2021년 6,450만명을 기록하였으며, 이민자는 2020년 85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함¹²⁾
- 프랑스는 출산 또는 육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장기적인 인구정책 차원에서 강력한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함
 - 정책 초기에는 가족 수에 따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가족구성원들의 사회복지 및 안전망을 확보하는 가족지원정책 차원으로 확대하여 운용함
- 세제 측면에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출산장려책으로 가족계수제도(N분N승제)가 있음¹³⁾
 -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 제도는 가족원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하여 과세 부담 인원수(part)로 나누어 소득세를 산정하는 방식임
 - 같은 생활수준에 있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가정이 더 많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 부부이거나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으로 이루어진 커플의 경우 공동과세(Imposition commune)의 대상임
 - 부부 또는 커플이 무자녀일 경우 기본적으로 과

세 부담 인원수는 2가 됨

- 부양자녀(미성년자 또는 독신 성인)가 있는 경우 두 자녀까지는 0.5단위씩 증가, 세 자녀부터는 1 단위씩 증가함
 - * 1인 가족: 1, 무자녀 부부(혹은 계약부부): 2
 - * 자녀 1명: 2.5, 자녀 2명: 3, 자녀 3명: 4, 자녀 4명: 5
- 부부가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 자녀를 각자의 거주지에서 교대로 보육할 경우, 부양 대상 자녀와 관련한 가족계수 제도는 부모 두 명 각각에 적용됨
- 가족계수제는 인구증가에 공헌하였으나 고소득 자에게 큰 경감혜택을 부여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계수 제도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추가되는 과세 부담 인원수 0.5당(자녀가 있는 부부) 1,678유로(약 242만원)
 - 추가되는 과세 부담 인원수 0.25당(부부 이혼 또는 별거에 따른 교대돌봄) 839유로(약 121만원)

2. 독일

-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38명에서 2016년 1.59명까지 회복되었다가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2021년 1.53명을 기록함
 - 독일 총인구는 2021년 8,339만명을 기록하였으며, 이민자는 2020년 1,57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8%를 차지함¹⁴⁾
- 독일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 속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주로 자녀양육과 혼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주는 조치를 하고 있음¹⁵⁾

12) 국회도서관, 저출산 대책: 한눈에 보기, 2023.5.15. p.82

13) 국회도서관, 저출산 대책: 한눈에 보기, 2023.5.15. p.84

14) 국회도서관, 저출산 대책: 한눈에 보기, 2023.5.15. p.74

15) 임동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22.3.28., pp.9-10

○ 자녀양육 세제지원

- 자녀소득공제(아동수당)는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돌봄, 양육, 교육 포함)를 부양자의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자녀소득공제는 아동수당과 연관되어 운영되며 납세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해야 함
 - * 아동수당이 두 제도 중 기본이며, 1인당 219유로(약 30만원)가 지급되고, 3명째부터는 225유로, 4명 이상은 250유로(약 34만원)가 지급됨. 18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직업이 있더라도 주 20시간 이내로 일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와 상관없이 수령할 수 있음
 - * 자녀소득공제는 첫 번째, 자녀 1인당 연간 2,490유로(약 338만원)를 공제하고, 두 번째, 자녀의 양육, 돌봄, 교육을 위한 비용을 자녀 1인당 1,320유로(약 179만원)를 공제할 수 있음
- 특별공제항목
 - * 자녀의 학교(대학은 불포함)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경우 최고한도 5,000유로 내에서 지출비용의 30%를 특별공제항목으로 공제할 수 있음
 - * 자녀(14세까지의 자녀)의 돌봄에 소요된 비용도 자녀 1명당 4,000유로 한도로 지출비용의 2/3를 특별공제 항목으로 공제할 수 있음. 다만,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장애로 인해 혼자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25세 미만의 자녀도 해당함

○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2분2승제)

- 독일 연방헌법(Grundgesetz) 제6조 제1항은 “결혼과 가정은 국가법질서의 특별한 보호 아래 놓여져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에 대한 국가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가장 대표적인 혼인보호규정이 소득세의 과세단위인 선택적 2분2승제인데, 결혼한 부부의 대부분이 2분2승제가 유리하므로 개인과세보다는 2분2승제를 선택하고 있음
 - * 과거 부부합산과세제도가 소득세 누진세 제도로 인해 혼인 부부의 세부담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자,

1957년 연방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과세가 헌법정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입법자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혼인 부부에게 개인과세와 2분2승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음

- * 2분2승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구분적용됨.
1단계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는 단계로, 2분2승제를 선택한 배우자의 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은 부부의 개별적으로 번 소득을 합산하여 배우자들의 공동소득으로 귀속시키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부부를 공동납세의무자로 취급함
- * 2단계는 합산한 소득에 대한 세율적용으로, 세율적용은 우선 1단계를 통해 합산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에 대해 기본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도출된 세액에 2를 곱하여 산출함. 공제는 부부합산인 경우 모두 2배로 적용됨
- * 예를 들어, 훌벌이로 남편의 소득이 5천만 유로인 경우, 맞벌이로 남편과 부인의 소득이 각각 2,500만 유로인 경우, 맞벌이로 남편의 소득이 4천만 유로, 부인의 소득이 1천만 유로인 경우 모두 부부합산한 소득 5천만 유로를 다시 2로 나눠서 부부의 소득을 각자 2,500만 유로로 보고 세율을 적용함

3. 일본

-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27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2015년 1.44명까지 반등하였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21년 1.3명을 기록함
- 일본 총인구는 2010년 1억 2,813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1억 2,495만명을 기록함. 이민자는 2020년 27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함¹⁶⁾
- 일본은 대표적인 저출산·고령화 국가로 2003년 「소자화 사회대책기본법」을 시행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제상 조치도 취하고 있음¹⁷⁾
- 출산·자녀양육 관련하여 2011년부터 15세 이

16) 국회도서관, 저출산 대책: 한눈에 보기, 2023.5.15. p.102

17) 임동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22.3.28., pp.8-9

하 자녀에 대한 부양소득공제(38만엔)를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아동수당은 중학교 졸업(15세 이하)까지 월 10,000~15,000엔씩 지급되며, 3세 미만은 15,000엔, 3세~초등학교 수료전은 10,000엔(셋째부터 15,000엔), 중학생은 10,000엔임
- 일정 소득 이상자는 일률적으로 월 5,000엔씩 징수

○ 혼인·육아 관련하여 결혼·임신·출산·육아 비용 등을 자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정액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 2015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직계존속이 자녀(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로 한정)의 혼인·육아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결혼·육아자금 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¹⁸⁾에는 그 신탁수의권 또는 금전 등의 가액 중 1,000만엔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됨¹⁹⁾²⁰⁾
- 혼인·육아자금은 결혼 비용과 임신, 출산 및 육아 비용을 말함

* 혼인 시 지출하는 다음과 같은 금액(300만엔 한도)

- ① 예식 비용, 의상 요금 등의 혼례(결혼 연회) 비용
- ② 임대 보증금 등의 비용, 이사 비용
- * 임신,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금액
- ③ 불임 치료, 임산부 건강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④ 분만 비용 등 산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⑤ 아이의 의료비, 유치원·탁아소 등의 보육료 등

○ 교육자금 관련하여 2013년 4월부터 2026년 3월 까지 수증자의 직계존속(조부모 등)이 30세 미만 수증자의 교육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자

금계좌를 개설한 경우²¹⁾에는 신탁수의권 또는 금전 등의 가액 중 1,500만엔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됨²²⁾²³⁾

- 교육자금은 아래에서 정한 금전을 말함
 - * 학교 등에 직접 지불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금전으로 일정한 것
 - * 학교 등 이외의 자에게 교육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전, 기타 교육을 받기 위해 직접 지불하는 금전으로 일정한 것

○ 한편 일본은 현재 개인단위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N분N승제 등 자녀가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2017년 시작되었음

- 일본 소득세 제도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과세이고 개인별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수의 증감이 세율과 세액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반면, 'N분N승'방식에 의하면 과세소득을 세대로 합계한 다음, 가족구성원 수로 나누어 적용세율을 결정하므로 자녀가 많은 세대일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2015년 8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대기업에 대해 여성활약 상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공개할 것을 규정. 인증 마크 제도와 연계하여 세제혜택도 부여

○ 2023년 12월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여성임원의 비율을 19%, 2030년까지는 3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 발표²⁴⁾

18) ① 직계존속과 신탁회사와의 사이의 결혼·육아자금 관리계약에 따라 신탁의 수의권을 취득한 경우, ② 그 직계존속의 서면증여에 의해 취득한 금전을 결혼·육아자금 관리계약에 따라 은행 등의 영업소 등에서 예금 또는 저축으로 입금을 한 경우, 또는 ③ 결혼·육아자금 관리계약에 따라 그 직계존속의 서면증여에 의해 취득한 금전 등으로 증권회사의 영업소 등에서 유가증권을 구입한 경우

19) 国税庁ホームページ, “No.4511 直系尊属から結婚・子育て資金の一括贈与を受けた場合の非課税”

20)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2의3

21) ① 신탁 수의권을 부여받은 경우, ② 서면 증여에 의해 취득한 금전을 은행 등에 입금한 경우, 또는 ③ 서면 증여으로 취득한 금전 등으로 증권회사 등으로 유가증권을 구입한 경우

22) 国税庁ホームページ, “No.4510 直系尊属から教育資金の一括贈与を受けた場合の非課税”

23)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2의2

- 여성활약추진법상 행동계획을 책정·공표·제출한 기업 중 우수한 제도를 시행한 기업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우수기업 인정을 받을 수 있음²⁵⁾
- 2020년 법 개정에서는 여성활약에 관한 정보공개를 강화함과 동시에 플래티넘 에루보시 인증마크 제도(4단계)를 도입

- 법에서 사용하는 인정기업의 정식명칭은 ‘인정 일반사업주(認定一般事業主)’ 또는 ‘특례인정일

반사업주(特例認定一般事業主)’인데 실무적으로는 ‘에루보시(えるぼし)²⁶⁾ 또는 ‘플래티넘 에루보시(プラチナえるぼし)’라고 함

- 인정 신청은 현 노동국에서 할 수 있는데 5개의 평가항목 중에서 실적이 1~2개에 부합하는 기업에게 1단계, 3~4개에 부합하는 기업에게 2단계, 5개 모두 부합하는 기업에게 3단계를 부여함
- 플래티넘의 경우는 평가항목이 강화되는데 행동계획상 목표를 실제로 달성해야 하고 그 실시현황이 특별히 우수해야 함

〈표 10〉 에루보시 인정평가항목

평가항목	에루보시 (성령 제8조)	플래티넘 에루보시 (성령 제9조의3)
② 채용	① 남녀별 채용 경쟁률(응모자수/채용자수)이 같을 것(최근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채용시 여성의 경쟁률 × 0.8’이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채용시 남성의 경쟁률’ 보다 고용관리구분 마다 각각 낮음) 또는 ② 최근 사업연도에 다음 (i)과 (ii)에 모두 해당 (i) 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율이 산업평균치(평균치가 40%를 초과하는 경우는 40%) 이상 (ii) 정규직의 기간적 고용관리구분에 있어서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평균치(평균치가 40%를 초과하는 경우는 40%) 이상	좌동
④ 계속 취업	① 최근 사업연도, 다음 (i) 또는 (ii)에 해당 (i) ‘여성근로자의 평균 계속근무연수’ ÷ ‘남성근로자의 평균 계속근무연수’가 고용관리구분마다 각 70% 이상 (ii) ‘여성근로자 계속고용비율 ²⁷⁾ ’ ÷ ‘남성근로자 계속고용비율’이 고용관리 구분마다 각 80% 이상 ② ①항 방식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사업연도에서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평균 계속근무연수가 산업평균치 이상	위쪽 ①항 기준 중에서, (i)의 경우는 80% 이상. (ii)의 경우는 90% 이상.
⑤ 근로 시간 등 근로방식	고용관리구분별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시간 및 휴일 근로시간의 합계 평균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월 45시간 미만	좌동
⑥ 관리직 비율	① 최근 사업연도에 관리직 여성근로자 비율이 산업평균치 이상, 또는 ②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평균 과장급으로 승진한 여성근로자 비율’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평균 과장급으로 승진한 남성근로자 비율’이 80% 이상	최근 사업연도에 관리직 여성근로자 비율이 산업평균치의 1.5배 이상
⑧ 다양한 경력 코스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다음 항목 중에서 대기업의 경우 2개 이상(비정규직이 있는 경우 반드시 ①항을 포함), 중소기업의 1개 이상의 실적이 있을 것 ① 여성근로자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② 여성근로자 경력향상에 기여하는 고용구분 전환 ③ 과거에 재직한 여성을 정규직으로 재고용 ④ 30세 이상 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	좌동
[기타]	① 인증을 취소 또는 사퇴한 경우 그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할 것 ②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조 위반으로 이에 따른 처분, 공표 기타 조치가 발령되지 않을 것 ③ 법 또는 법에 근거한 명령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없을 것 ④ 행동계획상 목표를 더 쉽게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플래티넘에 한함)	

자료: 厚生労働省, “えるぼし認定・プラチナえるぼし認定の概要”, 2019

24) 기업임원 중 여성 비율을 보면 2022년 기준, G7(일본제외)은 38.8%, OECD 29.6%, 일본(프라임상장기업) 11.4%. 일본의 경우 전체 취업자 수에서 여성 비율이 44%(2020년)로 세계 주요국과 비슷하지만 유독 여성임원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여성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점, 직장에서도 남녀간 역할분담 의식이 뿌리 깊은 점”을 지적함(PASONA. 2024.3.12.)

25) 법 제9조~제15조, 성령 제7조~제9조의5

26) 에루보시 인증마크는 알파벳 ‘L’이가 그려진 원 위에 별이 빛나고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음. 여기서 ‘L’은 여성의 Lady, 노동의 Labor, 본보기, 모범의 Lead, 칭찬의 Laudable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활력 있게 일하는 여성을 이미지하고 있고, 원은 기업과 사회를 나타내고 있음

27) ‘계속고용비율’은 10개 사업연도 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채용된 근로자(신규 졸업자 등에 한함) 중에서 계속해서 고용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표 11〉 에루보시 단계별 인정요건

단계	인정요건
1	① 5개 평가항목 중 1~2개를 충족하고 그 실적을 여성활약추진기업데이터베이스에 매년 공표 ② 충족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여성활약추진기업데이터베이스에 매년 공표하며, 2년 이상 연속으로 그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2	① 5개 평가항목 중 3~4개를 충족하고 그 실적을 여성활약추진기업데이터베이스에 매년 공표 ② 충족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여성활약추진기업데이터베이스에 매년 공표하며, 2년 이상 연속으로 그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3	5개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그 실적을 여성활약추진기업데이터베이스에 매년 공표
플래티넘	① 플래티넘 단계에 관한 5개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그 실적을 여성활약추진기업 데이터베이스에 매년 공표 ② 행동계획에서 정한 대응방안을 실시해 목표를 달성 ③ 정보공표 대상항목 중 8개 이상을 공표 ④ 남녀고용기회균등추진자 ²⁸⁾ 및 직업가정양립추진자 ²⁹⁾ 를 선임 ⑤ 고용관리구분마다 근로자의 남녀 임금 차이를 파악

자료: 厚生労働省, “えるぼし認定・プラチナえるぼし認定の概要”, 2019

□ 쿠루민 인정(くるみん認定)이란, 에루보시 인정과 마찬가지로 후생노동성이 실시하고 있는 인정 제도로, 육아 서포트를 실시하고 있는 우량 기업에 주어지는 인정임

○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에 근거해, 행동 계획을 책정한 기업 중, 계획에 정한 목표를 달성해, 일정 기준을 만족한 기업은 신청을 실시해, 육아 서포트 기업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의 인정(쿠루민 인정 등)을 받을 수 있음

○ 쿠루민 인정에도 등급이 있어, 「쿠루민」「트라이 쿠루민」, 한층 더 높은 「플래티넘 쿠루민」의 3종류가 있음

- 여성의 활약 추진이나 인재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육아 서포트가 아울러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에루보시 인정과 함께 쿠루민 인정 도 취득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적지 않음

□ 2024년도 세제 개정으로, 쿠루민 인정 · 에루보시 인정의 취득 기업에 대해, 임금 인상 촉진 세제에

있어서의 우대 틀이 설정되었음

○ 임금 인상 촉진 세제(舊 소득 확대 촉진 세제)³⁰⁾란, 종업원의 임금 인상을 실시했을 경우에, 임금의 증가분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 직원의 급여지급 총액을 1.5% 이상 증가시키면 증가분의 15%, 2.5% 증가시키면 30%가 공제되고, 대기업은 급여 지급 총액을 일정 이상 증가시키면 10~25%가 공제됨

-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비를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시키면 추가 10%가 공제됨.³¹⁾ 이 외 기업은 같은 요건에서 5% 추가 공제됨

○ 이 제도의 상승요건으로서, 쿠루민 인정 · 에루보시 인정 취득 기업은 5%의 공제가 추가 상승 설정됨

- 대기업의 경우 플래티넘 쿠루민의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율 5% 가산, 종업원 수 2,000명 이하의

28) 일본『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서는 사업주에 대해 직장에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와 대우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 및 실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담당자가 ‘남녀고용기회균등추진자’임

29) 일본『육아개호휴업법』에서는 사업주에 대해 기업 전체의 고용관리 방침 중에서 일과 가정과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기획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담당자가 ‘직업가정양립추진자’임

30) 貨上げ促進税制 (旧: 所得拡大促進税制)

31) 최대공제율은 중견 · 대기업은 급여지급액 증액액의 최대 35%, 중소기업은 45%이고, 공제상한액은 법인세액의 20%임

〈표 12〉 쿠루민 단계별 인정요건

단계	여성 육아휴업 취득률	남성 육아휴업 취득률	근로시간 수	
			풀타임근로자 (월평균 시간 외 · 휴일노동)	모든 노동자 (월평균 시간 외 노동)
1 (트라이 쿠루민)	75% 이상	7% 이상	45시간 미만	60시간 미만
2 (쿠루민)	75% 이상	10% 이상	45시간 미만	60시간 미만
3 (플래티넘 쿠루민)	75% 이상	30% 이상	45시간 미만	60시간 미만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domo/shokuba_kosodate/kurumin/index.html)

〈표 13〉 임금 인상 촉진 세제

구분	요구사항		상승요건 (교육훈련비)	추가요건 (육아양립, 여성활약지원)
	급여	세액공제율		
전기업 ³²⁾	+3%	10%	교육훈련비 전년도 대비 +10% ⇒ 세액공제율 5% 상승	플래티넘 쿠루민 ⇒ 세액공제율 5% 상승
	+4%	15%		
	+5%	20%		
	+7%	25%		
중견기업 ³³⁾	+3%	10%	교육훈련비 전년도 대비 +10% ⇒ 세액공제율 5% 상승	플래티넘 쿠루민 또는 에루보시 3단계 이상 ⇒ 세액공제율 5% 상승
	+4%	25%		
중소기업 ³⁴⁾	+1.5%	15%	교육훈련비 전년도 대비 +5% ⇒ 세액공제율 10% 상승	쿠루민 또는 에루보시 2단계 이상 ⇒ 세액공제율 5% 상승
	+2.5%	30%		

자료: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jinzai/syotokukakudaisokushin/r6_chinagesokushinzeisei_pamphlet.pdf, 경제산업성

중견기업이 플래티넘 쿠루민 또는 에루보시 3단계 이상의 인증마크를 획득한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율 5% 가산, 쿠루민과 에루보시 2단계 이상의 인증마크 획득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교육훈련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가산함

- 또, 적자로 법인세의 납부가 없었을 경우, 임금 인상 촉진 세제에 의한 감세 효과를, 최대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되었음

득 · 세액공제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혼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단위를 조정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일본은 혼인, 출산, 육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20 ~ 49세)가 증여받은 경우 최대 1천만엔까지 비과세하고 기업의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도 적용하고 있음

○ 그리고 독일의 경우 자녀소득공제의 경우 자녀의 범위에 대한 예외적용을 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함

4. 시사점

□ 주요국 대부분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자녀 소

32) 대기업은 자본금 10억엔 이상이고 종업원수 1,000명 이상 또는 종업원수 2,000명 초과

33) 직원 수 2,000명 이하

34) 자본금 1억엔 이하 또는 종업원수 1,000명 이하

IV.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 OECD의 조세격차(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³⁵⁾
 - OECD 평균 2자녀 홀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가 9.1%p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2자녀 홀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는 5.5%p에 불과
 -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10 ~ 15%p의 차이가 있어 독신가구보다 유자녀가구에 대해 세제상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부족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야 하며, 과거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정책이 아니라면 별 다른 효과가 없을 것임

1. 혼인 페널티 제거

- 1) 부동산세금의 혼인 페널티 제거
 - 혼인 후 5년 이내에 한쪽 배우자의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혼인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 * 취득세는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 시,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수는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취득세율을 적용하므로 혼인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 ※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확대(5년→10년)할 계획이라고 발표
- 개선방안
 - 혼인 후 5년 이내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의 예외조항은 유지하면서
 -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법개정일 이후 남녀 모두 49세 이하자로서 혼인하는 부부에게는 5년 제한 없이 결혼기간동안 부부 각각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조항을 적용하도록 세법을 개정
 - 가임연령(15~49세)을 고려하여 49세 한도를 설정하고, 여성에게만 49세 한도를 적용하면 남녀차별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남녀 모두에게 49세 한도를 적용

〈표 14〉 OECD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국가	2자녀 홀벌이가구 조세격차 ¹⁾	독신가구 조세격차 ²⁾	차이
프랑스	39.1%	46.8%	7.8%p
독일	33.1%	47.9%	14.8%p
일본	27.9%	33.0%	5.1%p
영국	27.0%	31.3%	4.4%p
한국	19.1%	24.6%	5.5%p
미국	19.7%	29.9%	10.2%p
OECD 평균	25.7%	34.8%	9.1%p

주: 1) One earner married couple with two children and earnings at the average wage level

2) Single individual without children and earnings at the average wage level

자료: OECD, “Taxing Wages 2024”, 2024

35) 임동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22.3.28., p.11

- * 기존의 모든 혼인부부에게 각각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조항을 적용토록 하면, 출생률 증가 효과는 없으면서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증가하게 되어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음
- *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은 비과세 유예기간을 5년 →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으로서, 혼인으로 인한 1주택 간주기간을 5년 연장할 뿐 근본적인 혼인페널티 제거 방안이 아님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혼인페널티 제거

① 근로장려금

□ 개선방안

ⓐ 소득요건

- 연간 배우자 포함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홀별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결혼하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혼인 페널티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
 - 단독가구 기준에 맞추어 혼인한 부부에 대해서는 홀벌이는 그 2배인 44백만원($=22\text{백만원} \times 2$), 맞벌이는 홀벌이에 비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52.8백만원($=44\text{백만원} \times 1.2$)으로 상향조정하여 혼인 페널티 문제를 해결할 필요
- ※ 2024.7월. 정부는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 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의 두 배인 연 4,4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발표

ⓑ 재산요건

-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일률적으로 2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혼인한 가구가 불리함
- 단독가구 재산요건이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 억 4천만원 미만이므로, 혼인한 가구는 그 2배인

4억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혼인 페널티 문제를 해소할 필요

② 자녀장려금

□ 개선방안

ⓐ 소득요건

- 연간 배우자 포함 총소득금액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요건 22백만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혼인 페널티 문제는 없음

ⓑ 재산요건

- 위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동일함

2. 혼인 지원

1) 배우자상속공제 및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의 폐지

□ 상속세가 형평성의 차원에서 세대(世代) 간 부의 이전에 대해서 과세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바, 재산 형성에 피상속인과 동등하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동일 세대인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가 전 생애 동안 균등한 노력을 통하여 형성한 재산이고, 상속재산이 명의상 부부 중 한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을 뿐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실질과세 원칙상 상속재산의 귀속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즉,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함에 따라 특정 피상속인의 사망 시 명의가 배우자에게 이전된다고 해서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과세임³⁶⁾

36) 고윤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41권 제1호, 2024.3. p.180

□ 영국의 경우 배우자 간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세제외를 하고 있으며, 미국의 상속세는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이 없음

○ 외국과 같이 배우자 간 상속재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할 필요가 있음. 배우자의 상속재산은 부부가 공동경영으로 축적한 재산으로서 재산형성 시 부부가 함께 기여했으므로 배우자 간의 상속재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하고, 이후 부모가 전부 사망 시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될 경우 과세하게 되면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으면서 정서적으로도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음³⁷⁾

□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부부간 부의 이전에 대하여만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어 상속과 재산분할의 불공평 문제로 위장이혼 등의 불법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따라서 부부간 재산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법은 미국의 경우처럼 1세대(世代) 1회 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부부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³⁸⁾

□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여 배우자상속공제 및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주택 상속 시 해당 상속주택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하면 상속주택 가액을 우선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전액 제외하여야 할 것임

- 독일도 배우자 또는 생의 동반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은 전액 공제하고 있음.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

기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야만 할 것임³⁹⁾

○ 한편, 배우자상속공제 및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의 폐지에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면,

-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중 '법정 상속분 이내'라는 조건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의 생존 배우자가 상속세 과세로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없게 되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가 늘어나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는커녕 징벌하는 문제(혼인·출산 폐널티)가 있으므로,
- 당장 우선적으로 '법정 상속분 이내'라는 조건을 삭제할 필요

2) 혼인비용에 대한 일정금액의 혼인세액공제 신설

□ 혼인을 하기 위하여는 주택마련, 예식장 비용, 예물 및 예단비용, 혼수용품 등 많은 혼인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근로자가 결혼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맞벌이 부부는 각각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과거에는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혼인소득공제를 인정하였으나, 2008. 12. 26.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폐지되었음

※ 2024.7.25. 정부는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하는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2024.1.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024년~20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

3.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1)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에 대한 소득세 선택적 N분N승제 도입

□ 프랑스는 저출생대책의 핵심정책으로 가족계수

37) 심충진, 상속세 과세체계와 인적공제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8권 제1호, 2019.3. pp.410-411

38) 김두복·서희열,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과세체계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5권 제2호, 2018.6., pp.75-76

39) 고윤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41권 제1호, 2024.3. p.183

(Quotient familial)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가족계수제도는 가족원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하여 과세 부담 인원수(part)로 나누어 소득세를 산정하는 방식(N분N승제)임.

- 구체적으로 N분N승제는 1차적으로 가구 전체의 소득을 합산한 후 이 합산액을 가구구성원 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세액을 산출하고, 2차적으로 이 세액을 가구구성원 수로 곱하여 전체 세액을 결정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같은 생활수준에 있는 가족이라도 자녀가 있는 가정이 더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 프랑스는 결혼하면 부부 단위로 2분2승제의 적용을 받고, 1자녀가 생기면 2.5분2.5승제, 2자녀는 3분3승제, 3자녀는 4분4승제, 4자녀는 5분5승제 등의 방식으로 소득세액을 계산함

- 프랑스 소득세율은 0%~45%의 5단계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이러한 프랑스 방식은 결혼 및 자녀 출산 시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어 제도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음

* 프랑스는 N분N승제의 적용시 고액소득자의 세액감면 혜택이 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과세 부담 인원수 0.5당(자녀가 있는 부부) 1,678유로(약 242만원)의 세액감면 한도를 운용

- 우리나라로 아이를 가지는 것이 비혼에 비해 유리해지도록 소득세 계산에 있어 자녀 수에 따른 합산균등분할방식(N분N승제) 도입이 필요

- 우리나라 소득세는 8단계 누진세율(6%~45%) 체계로서 N분N승제를 채택하면 자녀가 있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세액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나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음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프랑스 방식의 N분N승제를 한국의 소득세제에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국민일보, 2023.5.5.)

① 가구 단위로 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함

- 한국의 현행 소득세제는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개인단위주의에 입각해 운용되고 있음

② 이 제도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음

- 소득세의 누진적인 성격 때문에 세금이 감면되면 더 큰 이득을 보는 쪽은 아무래도 고소득층일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프랑스 방식의 N분N승제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수정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프랑스는 결혼한 부부에 대해 무조건 N분N승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저출산대책 관점에서 보면 결혼 그 자체로 출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불과하며, 모든 결혼 부부(기혼부부 포함)에게 N분N승제를 혀용하면 세수감도 상당할 것임을 감안할 때, 모든 결혼 부부에 대한 N분N승제 혀용은 효익 대비 비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N분N승제는 출산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해서만 혀용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형 N분N승제 도입: 선택적 N분N승제 혀용과 세액감면 한도 설정

◦ 현재 소득세 과세 체계는 개인별 과세로서 프랑스식의 전면적인 가족단위 과세를 도입하는 경우 대폭적인 소득세제 개편이 요구되므로,

- 자녀가 있는 가정이 원하는 경우 자녀 수 N분N승제를 선택하게 하면 소득세제의 대대적인 개편 없이 도입이 가능(「소득세법」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

- 현재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소득금액이 연간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되 이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자녀에 대한 선택적 N분N승제 도입 시, 소득자가 기준의 자녀장려금·자녀세액공제와 비교하여 자녀 N분N승제가 유리한 경우 이를 신청·적용토록 하면 기존 세제의 틀을 바꾸지 않고 도입이 가능함

- N분N승제 도입 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주어진다는 문제는 프랑스의 경우를 참고하여 세액감면한도를 설정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음

□ 한국형 자녀수 N분N승제 도입 방안

- 자녀수 N분N승제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이를 희망하는 세대에게만 적용함
- 자녀계수는 첫번째 자녀부터 자녀당1을 적용하는 방식 또는 프랑스 방식(두번째 자녀까지는 자녀당 0.5,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당 1을 적용)을 비교 검토 후 결정함
- 개인단위과세 대신 N분N승제를 선택할 경우 자녀세액공제나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음
- N분N승제로 고소득자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문제는 자녀 1인 추가시 받는 세액감면한도 설정으로 대응
- 세액감면 한도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실효성있는 출산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세액감면 한도 예시: 최초 1자녀 100만원, 2자녀째 200만원, 3자녀 째 300만원 등)

◦ N분N승제 적용사례(표 15) 참조

- 연소득 1억원 훌벌이 가구인 경우, N분N승제를 적용할 경우,
 - * 1자녀는 834만원 세액이 감소하나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1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고
 - * 2자녀는 960만원 세액이 감소하나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음

- 자녀수 N분N승제를 도입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목적이 이미 달성된 공제(예: 신용카드소득공제) 및 다른 공제와 중복되는 공제(예: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함⁴⁰⁾

* 신용카드소득공제액은 3조 9,458억원(2023년 기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8조 742억원(2022년 기준).

2)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 현재 8세 이상 자녀 1인당 첫째 15만원 세액공제,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출산·입양 자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하고 있음
- 현행 우리나라의 자녀세액공제는 다소 부족하며, 다자녀에 대한 배려가 더 강화되어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음

〈표 15〉 N분N승제 적용사례

구분	개인단위과세 세액(A)	N분N승제 세액(B)	절감액(A-B)	세액공제한도
연소득1억원 훌벌이가구	1자녀	1,956만원	374만원 × 3 = 1,122만원	834만원
	2자녀		249만원 × 4 = 996만원	960만원

주: 자녀계수는 자녀당1을 적용. 훌벌이 가구를 전제로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음(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절감액이 훌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세액 감면한도는 최초 1자녀 100만원, 2자녀째 200만원 적용

40) 오종현,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 2024.7.16. p.237

- 8세 이상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 입양자녀의 경우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이상은 150만원으로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해서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필요가 있음
- ※ 2024.7.25. 정부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 둘째 / 셋째, 만원): (현행) 15 / 20 / 30 → (개정안) 25 / 30 / 40으로 확대하는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

3)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의 상향조정

- 현재 자녀장려금을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출산 장려를 위해 이를 50% 상향조정하여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4)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상향

-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범위는 20 세 이하인데, 현실적으로 대학진학, 군복무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 자녀의 범위를 25세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녀가 총급여액 500만원(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범위를 25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유사한 예외적용을 하고 있음
 - ※ 프랑스의 경우, 가족계수의 계산시 포함되는 자녀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이나,
 - 성인이 되어도 일정한 범위의 자녀(21세 미만이고 미혼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25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 및 연령과 무관하게 군에 복무 중인 경우)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 포함될 수 있으며,
 - 성인 자녀가 별도의 수입이 없이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가지더라도 납세자가 양육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에는 25세까지 부모의 선택에 의해 포함될 수 있음⁴¹⁾

5) 기업의 일 · 가정양립 지원방안

-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 한 출산지원금⁴²⁾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기업의 비용 인정)하는 방안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음
 - 지난 2월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아이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신설하자, 이에 대한 비과세로 정부가 응답한 사례임
 - 하지만, 육아 지원을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일본의 여성활약추진법, 육아서포트기업 도입에 따른 법인세 공제혜택을 검토해야 함
 - 현재의 인센티브는 기업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 할 만큼 강력하지 않고, 예를 들어 조달청이 실시하는 입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기업(여성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①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되고, ② '여성고용우수기업'은 직급, 근로방식, 고용형태 등은 고려하지 않고 평균 여성고용률과 여성고용인원 만 일률적으로 평가하므로 여성 고용정책에 대한 질적평가가 어려우며, ③ '남녀고용평등우수 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극소수 기업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여성의 활약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가 부족함⁴³⁾

41) 전병욱, 1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한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조세연구 제19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6. p.61

4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2회 이내)한 경우

43) 유혜인, "일본 여성활약추진법의 시행 현황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동북아법연구 제13권제3호, 2022, p.373

-
- 여성 활약 및 육아 서포트 관련 선정된 우수기 업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인증제를 단계별로 설정해 인센티브 수준에 차등을 주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법인세 공제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도 현행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⁴⁴⁾에 추가 상승 요건으로 여성활약 및 육아서포트 인증 기업을 설정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

4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르면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근로자 수가 크거나 같은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소기업), 10%(중견기업)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한편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조금이나마 설정한다면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임

V. 결론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생이 심화되고 있고,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19년부터 자연인구감소가 발생하고 있음
 - 저출생 현상은 국가경쟁력 악화 등을 초래하며 나아가서 국가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그동안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낮은 출생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원인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경쟁압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높은 주택가격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추진함이 필요함
 - 따라서 세제를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으로 만들어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는 것이 비혼으로 있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도록 조세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혼인과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요 외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며, 오히려 비혼에 비해 혼인 부부가 불리한 혼인 페널티 현상이 존재함
 - OECD 통계에 따르면 다른 국가에 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므로,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부족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야 할 것임
 - OECD 평균 2자녀 홀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가 9.1%p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2자녀 홀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는

5.5%p에 불과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혼인 페널티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의 1세대 1주택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배우자공제제도 등에서 혼인을 불리하게 만드는 문제가 존재함
- 프랑스는 가족계수제도(N분N승제)로 출산가정에 대한 소득세 대폭 경감, 일본은 여성활약추진법 등으로 일·가정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미래, 즉 잠재성장을 제고와 국가소멸 방지를 위한 저출산 극복이 중요한 상황에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방안, 즉 혼인 페널티의 제거 및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함
- 혼인 페널티를 제거하기 위해 부동산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현행 혼인 후 5년 이내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예외조항과는 별도로 남녀 모두 49세 이하자로서 혼인하는 부부에게는 5년 제한없이 결혼기간동안 부부 각각 1세대 1주택자 조항을 적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혼인 가구가 단독 가구의 요건보다 최소한 2배는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혼인 장려를 위해 배우자간 재산 무상이전은 동일 세대(世代)간 이전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및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미국 및 영국과 같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혼인이 비혼 또는 이혼에 비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 혼인비용에 대해 그 일부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근로자가 결혼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맞벌이 부부는 각각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을 위해 소득세 ‘자녀수 N분N승제’를 도입하되,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희망하는 세대에게만 적용하고 고소득자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문제는 자녀 1인 추가 시 받는 세액감면 한도 설정으로 대응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 자녀세액공제액 및 자녀장려금의 대폭 인상과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상향이 필요함
- 이와 함께 기업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의 여성활약추진제, 육아서포트기업 도입에 따른 법인세 공제혜택을 검토해야 함

〈참고문헌〉

고윤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
점 및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41권 제1호, 2024.3.

국회도서관, 저출산 대책: 한눈에 보기, 2023.5.15.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 전략 (3) 저출산 대응 전략, 2023.11.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7.25.

김두복·서희열,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과세체계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5권 제2호, 2018.6..

김용민, 저출생 위기극복, 이제 실천이 답이다,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세미나, 2024.6.27.

서울신문, 26억 vs 4억...서울 아파트값 '초양극화', 2024.9.30.

심충진, 상속세 과세체계와 인적공제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8권 제1호, 2019.3.

오종현, 토론문,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 2024.7.16.

유혜인, “일본 여성활약추진법의 시행 현황 및 우리나라 예의 시사점”, 동북아법연구 제13권제3호, 2022.

이강호, 저출생의 가속화 미래대응전략, 차세대미래전략 연구원 세미나, 2024.6.27.

이중교·이동식,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한국세법학회, 2017.9.

임동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22.3.28.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2, 상경사, 2024.3.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 2024.5.2.,

전명숙, 1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한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조세연구 제19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6.

조태형, 인구·기후위기와 한국경제,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 2024.7.16.

황인도 외,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한국은행, 2023.11.

厚生労働省, “えるばし認定・プラチナえるばし認定の概

要”, 2019.

OECD, “Taxing Wages 2024”, 2024.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s://www.mhlw.go.jp>)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https://www.meti.go.jp>)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https://www.mof.go.jp/>)



발행일 2024년 11월 1일 | 발행인 류진 | 발행처 한국경제인협회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